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안)

출원료·심사청구료등 특허관련 수수료가 오는 4월부터 평균 11.2%가 오른다.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공고료를 폐지하고 출원 성격과 수수료 징구의 형평성문제등을 감안해 특허관련 수수료체계를 수익자부담원칙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외국의 특허관련 수수료수준과 납부형평성등을 고려, 특허공고료를 폐지하고 대신 특허·실용신안출원료와 심판·항고심판수수료, 그리고 심사적체 요인이 되고 있는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인상폭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特許출원 기본료(20페이지이하)가 현행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천원(20%)이 오르고 출원서 페이지가 20면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가산료도 종전 페이지당 5백원에서 6백원으로 1백원(20%)이 인상된다.

實用新案 출원기본료도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출원건수가 많은 商標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출원료를 8만원에서 8만7천원, 그의 상표출원은 4만2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각각 8.8%와 9.5%를 인상했다.

또한 최근 방외출원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심사청구비용을 특허는 5만6천원에서 6만7천원으로, 실용신안은 2만6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각각 19.6%와 23.1%올리고 특히 출원기술 기술이 한 가지(1項)를 초과할 때마다 내야하는 가산료도 1만5천원(50%)과 8천원(60%)으로 대폭상향조정했다.

또 출원, 심사후 신규등록되는 경우 첫 등록료(3년치)를 특허와 실용신안은 각 33.3%, 의장 61.9% 인상하고 가산료기준도 종전 5項(5가지 기술)에서 3項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추가비용 부담이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연차등록료는 4년이후부터 3년단위로 구분, 특허의 경우 기본료와 가산료를 최고 94.4%와 13.3% 인상조정했다.

이밖에 출원서기재내용과 양식등의 잘못으로 지정기간내에 보정서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장신청료를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50-1백%로 할증적용하고 심판 및 항고심판 청구료도 수익자부담원칙아래 최고 1백%까지 올렸다.

이번 수수료인상은 88년 70%, 90년 7.8%인상에 이어 3년만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심의를 끝나는대로 상공부령으로 곧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약 20억원의 추가수입을 특허행정전산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特許수수료 조정

(단위 : 원)

수 수 료 별	현		개 정 (안)	
	기 본 료	가 산 료	기 본 료	가 산 료
1. 출원료	15,000			
- 특 허		500	18,000	600(20.0%)
- 실용신안	10,000	(20면초과)	(20.0%)	(20면초과)
- 의 장	41,000	(20면초과)	(20.2%)	(20면초과)
- 상 표			45,000	좌 동
○ 존속기간 갱 신 외	42,000	5,000	46,000	5,000
		(지정상품 10개초과)	(9.5%)	(지정상품 10개초과)
○ 존속기간 갱 신	80,000	5,000	87,000	5,000
		(지정상품 10개초과)	(8.8%)	(지정상품 10개초과)
2. 심사청구료				
- 특 허	56,000	10,000	67,000	15,000(50.0%)
		(1항초과)	(19.6%)	(1항초과)
- 실용신안	26,000	5,000	32,000	8,000(60.06%)
		(1항초과)	(23.1%)	(1항초과)
3. 출원공고료				
- 특 허	23,000	13,000	폐 지	폐 지
		(3면초과)		
- 실용신안	21,000	13,000	폐 지	폐 지
		(3면초과)		
- 의 장	15,000	-	폐 지	-
- 상 표	4,000	-	폐 지	-
4. 신규등록료				
- 특 허	15,000	10,000	20,000	12,000(20.0%)
		(5항초과)	(33.3%)	(3항초과)
- 실용신안	10,500	3,000	14,000	4,000(33.3%)
		(5항초과)	(33.3%)	(3항초과)
- 의 장	10,500	-	17,000	
			(61.9%)	
- 상 표				
○ 존속기간 갱 신 외	141,000	5,000	153,000	5,000
		(지정상품 10개초과)	(8.5%)	(지정상품 10개초과)
○ 존속기간 갱 신	180,000	5,000	190,000	5,000
		(지정상품 10개초과)	(5.6%)	(지정상품 10개초과)

시책정보/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안)

수수료별	현행		개정(안)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가산료
5. 연차등록료				
- 특허				
○ 4~6년	28,000	15,000 (5항 초과)	34,000 (21.4%)	17,000(13.3%) (3항 초과)
○ 7~9년	56,000	20,000 (5항 초과)	68,000 (21.4%)	22,000(10.0%) (3항 초과)
○ 10~12년	71,000	25,000 (5항 초과)	136,000 (91.5%)	28,000(12.0%) (3항 초과)
○ 13~15년	140,000	30,000 (5항 초과)	272,000 (94.3%)	33,000(10.0%) (3항 초과)
○ 16~20년	280,000	35,000 (5항 초과)	544,000 (94.4%)	39,000(11.4%) (3항 초과)
- 실용신안				
○ 4~6년	21,000	6,000 (5항 초과)	25,000 (19.0%)	7,000(16.7%) (3항 초과)
○ 7~9년	41,000	9,000 (5항 초과)	50,000 (22.0%)	10,000(11.1%) (3항 초과)
○ 10년	50,000	12,000 (5항 초과)	100,000 (100%)	13,000(8.3%) (3항 초과)
- 의 장				
○ 4~6년	21,000	-	23,000 (9.5%)	
○ 7~8년	33,000	-	46,000 (39.4%)	
6. 심판청구료	50,000	5,000 (5항 초과)	100,000 (100.0%)	6,000(20.0%) (3항 초과)
7. 항고심판청구료				
- 당사자심판	90,000	10,000 (5항 초과)	150,000 (66.7%)	11,000(10.0%) (3항 초과)
- 거절불복심판	50,000	10,000 (5항 초과)	100,000 (100.0%)	11,000(10.0%) (3항 초과)
8. 지정기간연장신청료				
○ 1 회	10,000	-	15,000 (50.0%)	
○ 2 회	15,000	-	25,000 (66.7%)	
○ 3 회	20,000	-	40,000 (100%)	
○ 4 회	25,000	-	50,000 (100%)	
○ 5 회	30,000	-	60,000 (100%)	
평균수수료인상률		-		11.2%